기술해설

ISO 14000시리즈에서의 환경라벨링

The Environmental Labels for ISO 14000 Series

환경이 중요한 문제로서 의식되어짐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에 환경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수의 환경라벨링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존의 환경경영체제들은 대부분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제3자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환경경영체제는 국내외에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金 柱 恒*
Kim, Ju Hang

*공업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EMS심사원(보), 안산공과대학 교수, 본회 전무이사.
E-mail: kpea01@chollian.net

1. 서 론

오늘날 자연자원을 활용한 과학문명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주었으나, 반면에 경제발전으로부터 상반되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열대림감소, 사막화, 생물종 감소, 환경호르몬 등과 같은 지구 환경문제가 경제 체제내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이제는 인류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자연 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무분별한 경제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소비와 생산으로 하여금 다시 부산물로 폐기되는 폐기물이 환경의 질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생태계를 파괴 교란 시켜 오염된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보전 문제는 이제 한 국가의 정책을 떠나 전세계적 국가의 관심사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크나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환경보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생명과 존속에 어려움이 가중될 예측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아니 될 시대적 조명이 도래한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 환경관리의 시대적 조명을 검토하여 볼 때 1970년대 후반대를 일정지점(一定地點)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처리 기술의 공해방지 시대라고 한다면, 1980년도 후반에 이르러서는 지역별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시대였다면, 1995년도 이후부터는 사회 전체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 환경문제를 공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환경경영체제(EMS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경영 지원기법에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SO 14000시리즈의 구성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과학과 연계하여 ISO/TC207/SC3 소위원에서 규격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3자 인증라벨링, 자기선언에 의한 환경주장, 정량적 환경정보의 표시 등 3가지 타입(Type)의 환경라벨링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환경경영과 환경과학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를 개선함으로서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2-1 환경과 오염

환경이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표현 한다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과 생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물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즉 모든 생물이 사는 서식처로서 모든 영향을 주는 생활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은 좁게는 우리 주변을 일컬르고 있으며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지구와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환경 구성 요소로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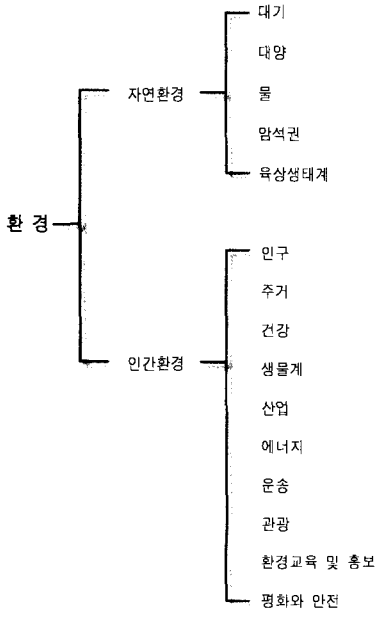

한편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들이 단순한 혼합물이 아니라 문제간 상호 연결된 복합체로서 파악 될 수 있으며 상호관련성, 광역성, 시차성, 탄력성과 비가역성, 간접적 피해, 계속적 진행 및 인간관계 규명의 곤란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2 생태계와 물질순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소위 생물체들이 서로 그리고 그들의 환경과 상호 작용함으로서 그 자체를 영속화시키는 생물체들의 집단이며, 그의 구성 요소로서는 무생물적 인자(制限因子)와 생물적 인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전자의 경우는 환경을 이루는 모든 화학적 물리적 요소들로서 사례를 들면 온도, 빛, 토양의 특성, 영양물질의 이동 가능성, 습도 등을 일컬으며, 후자의 경우는 녹색식물(生産者), 소비자, 진균류, 박테리아 등과 같은 분해자를 말한다.

한편 생물권내의 물질의 순환으로서는 크게 나누어 기체형, 침전형 및 수문형 순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기체형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산소, 질소, 황 등을 포함하는 화합물이 대기 또는 기체상 물질로 순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침전형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가 그 에너지의 저류지로서 마그네슘(Mg), 칼슘(Ca), 칼륨(K), 인(P), 기타 금속 등과 같은 물질이 육지에서 바다로, 다시 바다에서 육지로 순환하는 것을 말하며, 수문형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생존권 내에서 물의 순환에 의하여 물질이 순환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라벨링(EL: Environmental Labelling)

환경이 중요한 문제로서 의식되어짐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에 환경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수의 환경라벨링(〈그림 1-1~4 예시〉)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라벨링에는 개략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① 제3자 인증 환경라벨링(ISO Type I 환경라벨링에 대응): 환경마크(한국:'92년 도입), Blue Angel(독일:'77년 도입), Eco Mark(일본:'89년 도입), White Swan(북구제국:'89년 도입), Environmental Choice(캐나다:'90년 도입), Green Seal(미국:'91년 도입) 등

일본(EcoMark) 독일(BlueAngel)

북구제국(EuropeanFlower) 캐나다(EnvironmentalChoice

〈그림 1-1〉 제3자 인증환경라벨링

② 단일목적 환경라벨링 : Green Mark, Energy Star 등

Energy-Star Green-Mark

〈그림 1-2〉 단일목적 환경라벨링

③ Recycle 목적 라벨링 : 음료수관이나 합성수지의 소재 표시 라벨링 등

Steel관 Aluminium관 PET Bottle

〈그림 1-3〉 Recycle 목적 라벨링

④ 행정에 의한 라벨링 : 환경심볼 라벨링, EcoShop 표시 등

칼마크점(日本福岡市) 쓰레기減量化資源協力店(日本市川市) EcoStore(東京都墨田區

〈그림 1-4〉 행정에 의한 라벨링

⑤ 기타 환경라벨링 : 회수위탁(DSD), 경고 표시 등

이와 같이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됨과 함께 환경라벨링이 시장에 범람(氾濫)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에 환경라벨이 표시되고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요구됨에 환경라벨링은 소비자가 라벨링을 참고하여 환경부하(環境負荷)가 적은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 구매, 사용하는 것으로서 즉 시장원리에 의한 계속적인 환경부하의 저감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라벨링의 증가는 환경라벨링의 요구나 수순 등에 관한 국제기준의 제정이 요구되어 지게 되었으며 이를 수반한 ISO14000시리즈에 [환경라벨링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규격을 제정하였다.

국제규격에는 이의 표제(表題)를 [환경라벨링 주장]으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정보를 나타내는 라벨링, 문장어귀, 수량표시(數量表示) 등 전체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ISO규격에는 [환경라벨링과 선언]의 공통 원칙을 ISO14020(일반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원칙은 ISO로서 규격화가 되고 Type Ⅰ, Ⅱ, Ⅲ 환경라벨링의 상위 규격으로서 위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환경라벨링에 원칙에는 정확하고 검증이 가능할 것, 무역장벽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과학적 수법에 의거한 기본에 관한 3원칙, 전과정(life cycle)을 고려할 것, 기술혁신을 저해 하여서는 아니 될 것, 기술혁신에 관한 2원칙 개발 공정(Process) 등 제도의 투명성이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요구 사항 등 절차에 관한 2원칙, 제도 운영이나 정보 개시에 관한 2원칙의 합계 9원칙이 정해져 있다.

3-1 환경라벨링의 제도

환경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우수한 환경성을 지니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서 해당제품의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환경적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환경 비용의 내부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 친화적 제품의 수요를 증대 시킴으로서 모든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을 제고 하도록 유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2 환경라벨링의 무역효과

원칙적으로 환경라벨링은 구속력 있는 요건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사를 선택 결정하는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므로 직접적인 규제 조치라고는 할 수 없다.

이에 환경라벨링은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즉 LCA(life cycle assessment)에 기초하여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에 규정된 표지를 부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차별적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자발적 제도가 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수입국의 환경라벨링을 반드시 획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라벨링의 부착 여부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라벨링 부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긍극적으로는 제품의 시장 접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제조 공정상의 환경오염 여부가 환경라벨링 부여 기준의 하나가 될 경우 제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PPMs : processes and production)이 포함하게 되며, 이점이 무역장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역과 환경위원회(CTE : Committee of Trade and Environment)의 입장이 되고 있다.

3-3 국제표준화 기구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ion)는 상품 및 용역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세계표준화 및 관련 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표준 및 관련활동의 세계적 조화를 촉진하고 국제규격을 개발, 발행하며 회원기관과 기술위원회 업무간의 정보교환 주선 및 관련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이끌고 있다.

ISO는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법적으로는 비정부간 기구의 지위를 가지며, 1944년에 18개 연합국 국가 표준단체에 의해 구성된 국제연합 규격조정위원회(UNSCC)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1947년 2월 23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ISO의 회원기관은 한 국가에서 1개의 단체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996년 현재 약 12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각국을 대표하여 이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에서 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협회들이 대부분 이다.

또한 ISO에서 국제 표준과 관련된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① 기술위원회(TC : technical committee)

② 분과위원회(SC : sub-committee)

③ 실무작업반(WC : working group)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ISO 회원자격의 종류에는 정회원(member body), 준회원(correspondent), 구독회원(subscriber)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기술위원회 회원도 P회원(participating), O회원(observer)로 구분, 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63년 6월 당시 공업진흥청이 대표기관으로 가입하여 현재는 국립기술품질원이 대표기관의 임무를 맡고 있다.

3-4 환경라벨링의 ISO 유형

(1) Type Ⅰ 환경라벨링

ISO에 의한 환경라벨링 분류는 에코마크(EcoMark)에 의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도 속하지 않는 제3자가 인증하는 환경라벨링을 Type Ⅰ 환경라벨링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전과정에 배려하여 미리 설정한 복수의 기준에 의해 제3자가 인증하는 임의 참가 환경라벨링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타입의 제도는 1978년 당시 서독에서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을 보급시키기 위해 제품 등의 사용이나, 폐기처분에 이를 때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한 "Blue Angel"이 최초의 것이 되었다.

환경문제가 제품 등을 비롯한 생산으로 하여금 산업 공해로부터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인하여 도시 생활형 공해로 변화됨에 따라 제품 등의 사용이나 폐기 단계(段階)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게 되었다.

이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시키는 수단으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을 식별(識別)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우선적인 구매나 사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자 인증의 환경라벨링이 탄생하게 되었다.

환경라벨링에 의한 환경부하의 저감효과가 인식 되어짐에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발 도상국등 〈그림 2〉에 예시한 바와 같은 많은 국가에서 환경라벨링 제도가 실시되게 되었다.

환경라벨링 제도는 각국의 환경적인 배경에 의해, 실시방법, 대상제품이나 그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환경라벨링은 제품 그의 물건을 환경적 측면으로부터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경을 방패로 무역장벽을 만들기 쉬운 점이 염려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관에서는 Type Ⅰ 환경라벨링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되게 되었다.

ISO Type Ⅰ 환경라벨링의 규격은 ISO 14024 [환경라벨링과 주장/ Type Ⅰ 환경라벨링/ 원칙과 절차]에 대한 지원으로 되고 있다.

이의 규격은 환경라벨링 제도를 실시하는 제3자 기관에 대하여 실시방법에 관한 지침(Guide line)을 정한 것이다.

이 규격은 제도의 신뢰성(信賴性), 투명성(透明性), 공평성(公評性), 평가(Assessment)의 용이(容易) 등을 확보하여 국제무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격의 내용은 제품 범주의 선정, 인증기준의 제정 및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배려하여야 할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규격에는 환경라벨링의 구체적인 환경 항목이나 그의 수준(Level)이나 배출 기준 등을 규정하기도 하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여 ISO판의 환경라벨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NordicSwan(북구제국) GreenSeal(미국) GreenLabel(싱가포르)

Austrian EcoLabel(오스트리아) GreenMark(대만) AENOR환경마크(스페인)

NF Environmental(프랑스) Holland EcoMark(화란) 환경마크(대한민국)

〈그림 2〉 세계 각국의 에코라벨의 예

(2) TypeⅡ 환경라벨링

ISO에서는 TypeⅡ 환경라벨링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에 관한 정보의 자기주장]으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제품의 환경선언으로 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 등에서 실행하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환경정보의 전부가 포함되기 위하여서는 특히 환경에 관한 광고나 선전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의 규격은 ISO14021[환경주장의 자기선언]으로서 묶여져 있으며 TypeⅡ 환경라벨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스럽게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①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것으로 허위(虛僞)가 아닐 것
②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유의성(有意性)이 있을 것
③ 주장하는 환경항목이 명확한 것으로 되어야 하며 오해가 없을 것
④ 전과정(Life cycle)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대한 효과가 클 것
⑤ 주장(Assertion)과 설명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
⑥ 주장이 제3자에 의하여 인증된 것과 같이 오해를 주어서는 아니 될 것
⑦ 막연한 환경주장(Environmental claim)을 간주해서는 아니 될 것

"무공해", "환경친화적", "그린" 등 막연한 표현으로 사용되며 빈도가 많은 다음의 12 항목의 환경주장을 선정하여 특정 환경주장 항목으로서 용어의 정의, 사용조건, 심볼(Symbol), 검증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재활용재료(再活用率)
② 성자원(省 資源)
③ 회수에너지(Energy)
④ 고형폐기물 삭감
⑤ 성 에너지
⑥ 절수(節水)
⑦ 장수명 제품(長壽命 製品)
⑧ 재이용가능/재충전가능
⑨ 재활용가능
⑩ 역분해성(易 分解性)
⑪ 퇴비(Compost)가능
⑫ 분해성(分解性)

심볼(Symbol)의 사용은 "재활용(Recycle)가

능" 및 "재활용재료(Recycle rate : 재활용률)"의 2개 항목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合意) 되었다.

이 같은 2가지 주장에 대하여 〈그림 3-1, 3-2〉에 예시한 바와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루프(loop)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문구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재활용재료(Recycle Rate)에 있어서는 백분율(%:percentage)로 표시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였다.

〈그림 3-1〉 심볼루프중 Recycle이 가능한 예

〈그림 3-2〉 재활용재료(Recycle Rate)로서 가능한 예

Type Ⅱ 환경라벨링의 규격은 당초 3가지 규격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가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이를 하나로 묶어서 ISO 14021 [환경라벨링과 주장/환경주장의 자기선언]의 규격이 제정 되게 되었다.

(3) Type Ⅲ 환경라벨링

Type Ⅰ환경라벨링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부하의 대소를 라벨의 유무에 의하여 같은 제품 범주(Category) 내의 상대평가(相對評價)로 하는 것에 반하여, Type Ⅲ 환경라벨링은 환경부하를 각각의 환경부하 항목마다 정량적 평가로 하는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 종류의 라벨링에는 미국의 과학적 인증시스템(SCS: Scientific Certification System)사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 "리포트카드(Report card)"가 넓게 알려져 있다.

ISO에는 Type Ⅲ환경 라벨링을 [미리 설치한 환경지표(環境指標)에 근거, 제품의 공급자에게 정보제공라벨에 의해 제공되고, 제품의 전과정(Lifecycle)에 미치는 환경정보]와 정의로 되고 있으나 금후의 논의에 의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TypeⅢ 환경라벨링은 SCS사의 것을 포함,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각국이 실험적으로 실행한 사례를 집합하여 볼 때 이의 라벨링이 가져야될 요구 등에 있어 검토가 시작되게 되었다.

규격화에 대한 검토는 현재 작업반(WG : Working Group)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라벨대상은 기업 등 조직체의 구입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때 기업과 일반소비자에 대한 라벨링을 어떻게 구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으나, 미리 설정한 환경지표를 사용하는 것과 신뢰성(信賴性) 확보나 다른 라벨링 제도와의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고 있다.

평가 수법에서는 Type Ⅰ 환경라벨링의 LCC(Life cycle consideration)은 채용되고 있으나 제품의 전과정(Lifecycle)을 통하여 환경부하의 평가방법이나 평가항목 등은 금후 검토가 논의될 것이다.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자기주장에 의한 방식과 제3자 인증에 의한 방식이 고려되고 있으나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

라벨링 표시방법이나 제품의 환경부하를 비롯한 범위 등에 있어서도 논의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실시의 사례가 적은 Type Ⅲ 환경라벨링의 규격을 작성하는 것은 필요성에 있어서

논의된 결과, 규격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보사(VOLVO)"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3-5 환경라벨링의 기능

대부분의 환경라벨링은 제3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품을 생산하는 개별 기업이 자사 제품의 환경 친화성을 스스로 공포하는 자체적인 환경라벨링도 있으며, 환경라벨링이 한 국가의 정책 도구로 활용될 경우에는

① 다른 제품의 시장 진입이나 자국시장에 다른 나라 제품의 접근을 막는 등 시장활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② 광고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유도 할 수 있으며

③ 이러한 여러 가지 격려(incentive)를 통하여 생산자를 환경 친화적 공공정책 목표달성에 동참하도록 유인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경영 조직에 대한 평가는 환경경영체제(EMS)에 대한 인증으로 나타내며, 제품의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으로 환경라벨링 인증과 연결되는 것이다.

3-6 평가방법

환경라벨링 부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전과정평가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는 원료의 조달에서부터 제품처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에 환경라벨링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간단하나마 환경경영 지원기법에서 환경라벨링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정부, 주주, 종업원, 금융기관, 환경단체, 일반대중 등의 이해관계자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향상 되면서 이들로부터의 압력이 강화 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되게 되였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그린상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비롯한 투자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실태를 중요한 평가 요소의 하나로 고려하게 되었다.

기존의 환경경영체제들은 대부분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제3자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환경경영체제는 국내외에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환경라벨링(EL : Environmental Labelling), 환경성과평가(EPE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 등도 환경경영체제와 연계되어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유지가능한 경제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d)개념이 보편화될 전망으로 환경라벨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원고 접수일 1999. 9. 20)